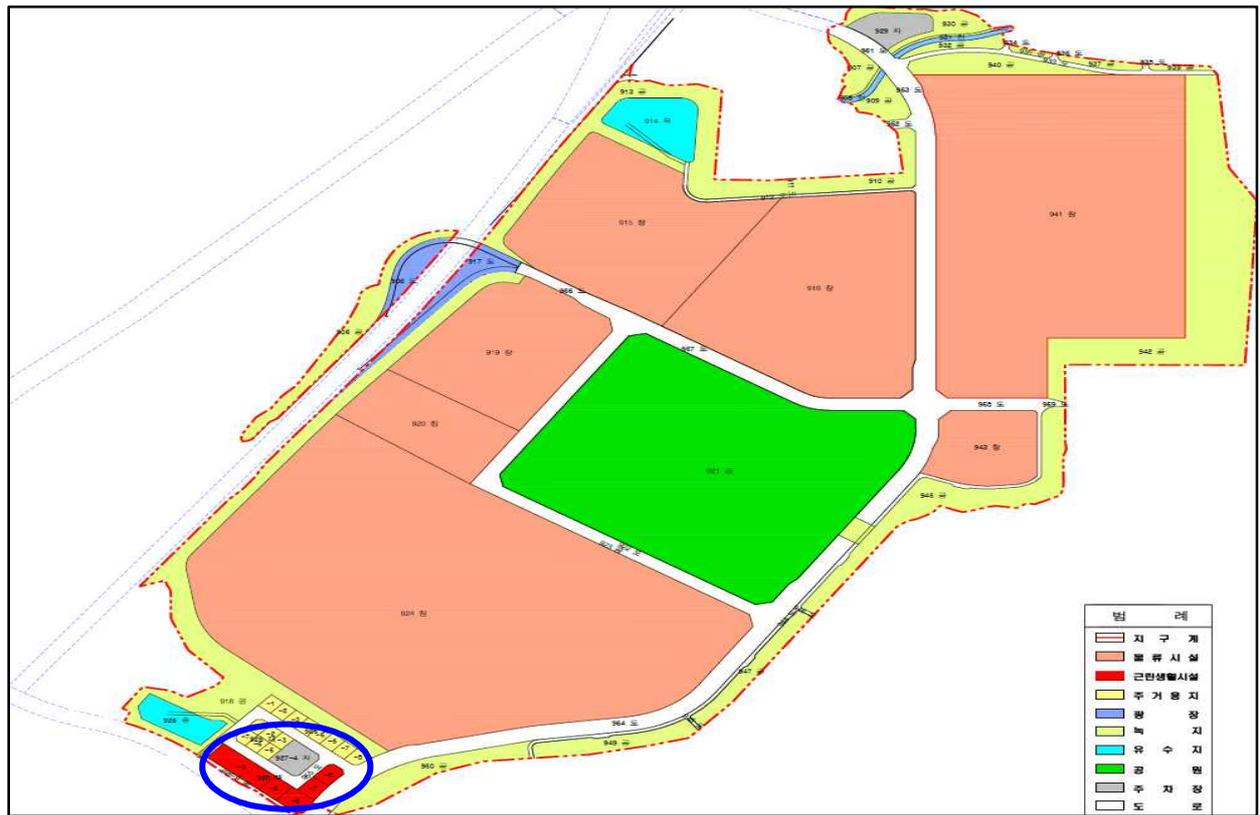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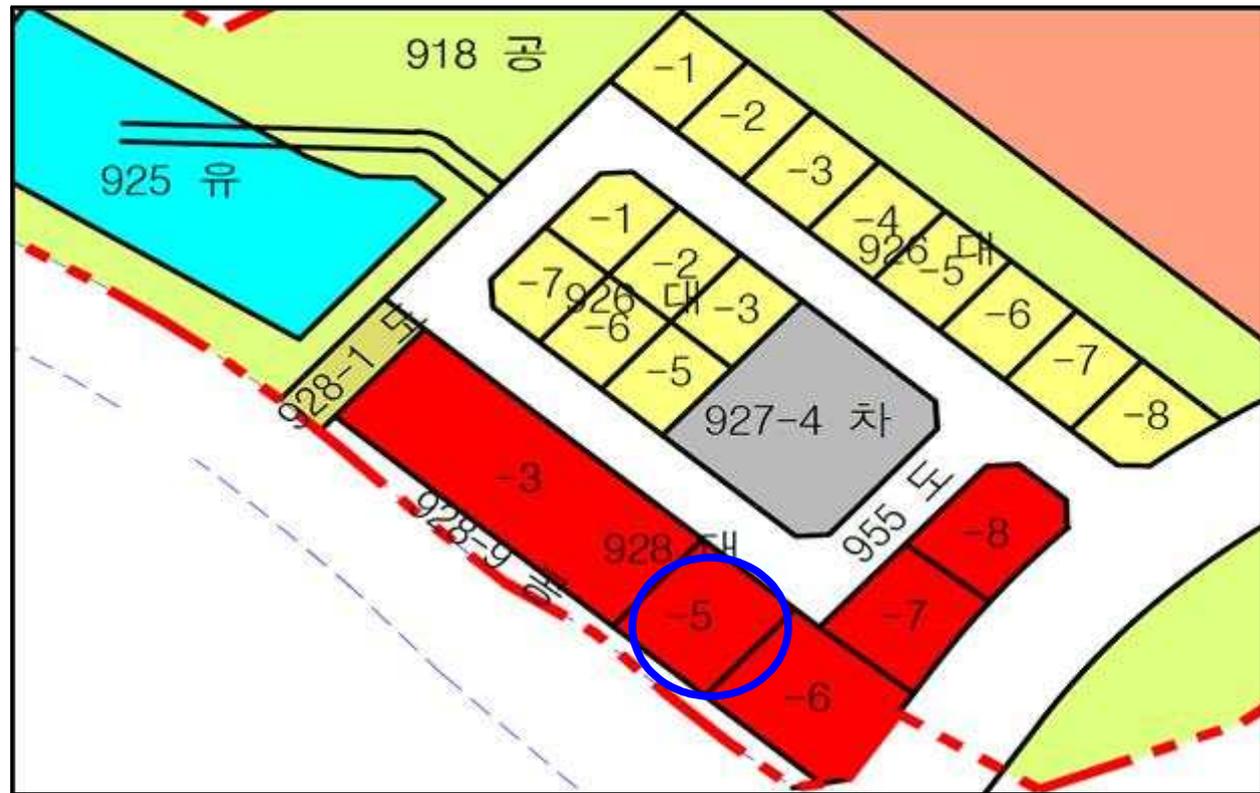
1

안성원곡 물류단지

토지이용계획도



세부필지별 위치도



□ 건축행위기준

[지원시설용지(근린생활시설용지)]

구분		근린생활시설용지
건축물 용도	도면표시	SR
	허용 용도	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시설(자목 중 장의사, 차목의 단란주점, 타목의 안마시술소 제외)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다목 관람장 제외)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(납골당 제외)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및 오피스텔, 금융업소, 사무소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</p> <p>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나목 전신전화국, 라목 통신용시설</p>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	60% 이하	
용적률	200% 이하	
높이	4층 이하	
배치	-	
형태	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시형으로 권장한다.	
색채	<p>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</p> <p>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.</p>	
건축선	<p>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를 공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.</p> <p>- 전면도로변:3m, 녹지변:2m</p> <p>공개공간의 지상에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시설(조경,파고라,휴게 의자 등)을 제외한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.</p>	